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08일

가좌2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오 *영	오 *영 1965-04-27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24번길 (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24
오 *영	이 *미 1967-01-27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24번길 (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24